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년 1월 5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6년 1월 6일

라. 상정일자: 2026년 1월 19일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영철

나. 제안이유

○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디자인 경쟁력은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AI 기반 혁신 디자인 기술을 지역 산업에 도입하고, 전주기 디자인 지원과 데이터 기반 브랜드 고도화, 디지털 융합 마케팅 디자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상품기획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사무명 :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 2) 추진근거 및 필요성

가) 추진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3)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나) 필요성 :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과 구미 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3) 위탁사무내용: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

- 가) 중소기업 디자인·상품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 나) 전주기 디자인, 브랜드·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
- 다)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평가 관리
- 라) 사업 수행 점검, 컨설팅 및 성과 관리
- 마) 사업비 집행 관리, 정산 및 결과보고

- 4)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5) 위탁기간 : 2026. 1. ~ 12.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5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500	95	375	30	

7)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5.12.26)

8)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9) 부서의견 : 디자인 관련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디자인·상품기획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AI기반의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전반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디자인 및 상품기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 역량이 중요한 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세부 지원사업 중 로컬 가치 창출형 브랜드 및 디자인 상품 개발은 지원 건수가 1건에 그치고 있어, 세부 내용 조정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구미시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초기 창업기업까지 확대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및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맞춤형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동의안 내 비용추계서 작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인건비 및 간접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